

감사보고서

학교법인 삼일학원 이사장 귀하

1. 일 정 : 2018.04.10.~ 2018.04.13.(4일간)
2. 업무범위 : 2017회계연도 재무제표 감사(내부감사)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에 의하여 학교법인 삼일학원(협성대학교) 및 중.고등학교의 2017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자,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일반적인 감사 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감사결과 학교법인 삼일학원(협성대학교) 및 중.고등학교의 재산상황·회계와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 처리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사학기관 감사 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

감사권고사항

▶ 협성대학교(2건)

1. 임대보증금 관련

2017년 7월 1일에 체결된 교내 야외커피전문점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임대보증금을 계약즉시 3천만원을 임대인에게 받도록 되어있고, 임대료를 결산일까지 2천 5백만원을 받게 되어 있으나, 결산일(2017.02.28.) 현재 이행 되지 않고 있음. 정확한 미수금관리를 위해 장기적으로 각 부속기관 및 현 업무부서에게 외부로부터 회수 하여야 할 권리가 확정된 채권을 파악할 수 있는 내부통제를 구축하시기 바람.

2. 바이오스타 상호협력계약 관련

2016년 11월 8일 바이오스타와 체결된 상호협력계약서에서는 재생의학연구원 설치비용과 관리비용 등으로 2016년 11월 이후 연 3천만원씩 5년간(총1억 5천만원) 바이오스타가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학교회계에서는 1년차 수령분을 기부금으로 수입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사용료에 대한 언급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교육부와 사학진흥재단 등의 전문가에게 문의 하시어 적절한 항목으로 수입처리 될 수 있도록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산학협력단 (4건)

1. 자산성이 없는 미수금 관리

산학협력단의 미수금 중 환경부 탄소중립도시 관련 송영배에 대한 미수금 4백 7십만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100,000원은 자산성이 없는 금액으로 판단됨. 이러한 자산을 파악하여 회수 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자산성을 검토하시기 바람.

2. 미지급비용 관련

산학협력단의 미지급비용 중 진선희 퇴직금, 이유진 퇴직금 금액 합계 4,849,752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이는 2015년에 이미 지급된 금액으로 확인됨. 이러한 부채를 파악하여 지급하거나 부채에서 제거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부채의 실재성을 검토하시기 바람.

3. 임대보증금 관리

산학협력단의 창업보육센터 임대보증금의 관리가 임대계약서상의 금액과 약 4백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는 임대보증금관리의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함. 이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할 수 있는 내부통제 제도를 구축하시기를 바람.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관리

산학협력단은 과세 당하지 않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를 설정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정되어 있는 잔액은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에 사용 되어져야 할 금액으로 확인되는바, 이에 대한 세심한 관리를 하시기를 바람.